

1. 개정이유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사육곰 보호시설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함(안 제7조의5 개정)
-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 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5, 안 제29조의6)
-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마. 법 제34조의27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야생생물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출·수입 등의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을 양도·양수·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개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하려는 자의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②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양수한 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 대상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사한 야생동물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양수·양도·보관 및 폐사에 관한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9조의3(백색목록 지정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하 “백색목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1.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2. 위험성 및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

3. 질병 전파 가능성

②환경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백색목록을 매년 검토하여 지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토·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절차 등 제1항에 따른 백색목록 검토·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 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 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야생생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수출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서에 수출·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 또는 양수·보관한 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양수·양도·보관 및 폐사에 관한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9조의7(야생동물 영업의 허가)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의 영업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별표 8의13의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
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이수서(영업허가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일 것을 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
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의6에 해당되
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
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8의13의 시설 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4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의 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29조의8(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5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3.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허가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제29조의9(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营业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 6 서식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야생동물 영업자가 제1항 휴업·폐업 신고서의 야생동물 처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일 전까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7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6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8의14와 같다.

제29조의12(교육) ①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2. 환경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②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년 3시간 이상의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제

2항의 정기 교육 외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야생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해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영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13(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시 야생동물 영업자의 필요한 조치)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야생동물 영업자는 제29조의9제1항 휴업·폐업 신고서의 야생동물 처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야생동물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가.·나. (생략) <u><신설></u> 다. (생략) <u><신설></u> 라. ~ 사. (생략) <u><신설></u>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u>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u> <u>라. (현행 다목과 같음)</u> <u>마. 법 제34조의27에 따른 사육</u> <u>곰 보호시설</u> <u>바. ~ 자. (현행 라목부터 사목</u> <u>까지와 같음)</u> <u>제29조의2(야생생물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출·수입 등의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을 양도·양수·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개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하려는 자의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②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양수한 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 대상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사한 야생동물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양수·양도·보관 및 폐사에 관한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9조의3(백색목록 지정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하 “백색목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1.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2. 위험성 및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

3. 질병 전파 가능성

②환경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백색목록을 매년 검토하여 지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토·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절차 등 제1항에 따른 백색목록 검토·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

입·반입 허가)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 서식의 지정관리 야

<신 설>

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 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야생생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수출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신 설>

3.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서에 수출·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 또는 양수·보관한 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신 설>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양수·양도·보관 및 폐사에 관한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9조의7(야생동물 영업의 허가)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 1서식의 영업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별표 8의13의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이수서(영업허가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일 것을 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의6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8의13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신 설>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4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의 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29조의8(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5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3.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1. 허가증

2. 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의13 서식의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허가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제29조의9(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6 서식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

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야생동물 영업자가 제1항 휴업·폐업 신고서의 야생동물 처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일 전까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

<신 설>

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7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

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
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
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
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6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
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
에게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허가
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 사항) 법 제2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8의14와 같다.

제29조의12(교육) ① 법 제22조의8 제4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2. 환경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②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년 3시간 이상의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야생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

<신 설>

해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영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13(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시 야생동물 영업자의 필요한 조치)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야생동물 영업자는 제2
9조의9제1항 휴업·폐업 신고서의
야생동물 처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야생동물 위탁
관리업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야
생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
당 야생동물 영업자가 제1항에 따
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3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별표 8의6 중 “(제31조의4 관련)”을 “(제31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13 및 별표 8의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2) 위반사항란 2) 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3) 위반사항란 3)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31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제29조의7 관련)

1. 공통 기준

-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사 관련 부속시설에 가축과 야생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 다. 영업시설은 야생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야생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확인 및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라.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야생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 마.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야생동물 판매업

- 1)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꼬리가 전체 몸길이의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를 제외한다)
 -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3) (1)과 (2)에도 불구하고, 뱀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일 것
- 2)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3)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격리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야생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
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동물 수입업

-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3) 야생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5) 격리실은 가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 야생동물 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의 경우) 및 격리
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야생동물
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사육설비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야생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
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다목의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체중 3킬
로그램 미만인 소형 야생동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소리를 내는 야생동물의 경우),
악취방지설비(냄새가 나는 야생동물의 경우)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꼬리가 전체 몸길이의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를 제외한다)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3) (1)과 (2)에도 불구하고, 뱀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일 것

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조류는 제외한다).

3) 분만실

가)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조류는 제외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격리실은 가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1) 야생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판매업,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비 고

제1호(공통기준)의 가목은 2026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8의14]

야생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9조의11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의13에 따른 영업장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나.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 다.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위해 방지를 위해 외부 공간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거나 시설물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해야 한다.
- 라.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행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2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마.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영업장별로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영업장에 영업자가 상주하는 경우 영업자 본인도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 바. 야생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 사. 노화나 질병이 있는 야생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된다.
- 아.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 자. 영업장 내부에는 영업허가증 및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 차.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카.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타. 영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파.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하. 야생동물 판매업자, 야생동물 수입업자, 야생동물 생산업자,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등)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종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거. 야생동물 판매업자, 야생동물 수입업자 및 야생동물 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야생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너. 야생동물 판매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폐업 신고서의 야생동물 처리계획에 따라 야생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야생동물 판매업자

- 1) 야생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 등에 특화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 운송업체를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
- 2)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을 판매해야 한다.
- 3)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한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다.
- 4) 야생동물 판매 시 해당 야생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5) 야생동물 판매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야생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야생동물을 생산(수입)한 야생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야생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마) 판매 시의 건강상태

바) 판매일 및 판매금액

- 6) 5)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야생동물 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야생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매매(분양)금액	금 원 정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	----------	---------	---	---	---

2. 야생동물 기본 정보

야생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암 / 수
----------	----	----	-------

출생일			
입수일		생산자/ 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특징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현재 상태	[]양호 []이상 []치료 필요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분양인)	주소				서명 날인
	영업허가번호				
	연락처		성명		
매수인 (입양인)	주소				서명 날인
	연락처		성명		

- 8)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 9) 별지 제31호의19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야생동물 수입업자

- 1) 야생동물 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2) 별지 제31호의19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야생동물 수입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 야생동물 생산업자

- 1)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해야 한다.
- 2) 개체관리카드에 출생일, 출산야생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 3)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야생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야생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 4) 별지 제31호의19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야생동물 생산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

- 1)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2) 야생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3)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 허가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나)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 라)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 마)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 5) 야생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야생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야생생물 []양도 []양수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양수인 (보관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생물정보	학명	수량	용도	양도사유(보관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양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입한 개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하려는 자의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자르는 선

제 호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확인증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발급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야생생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연락처
	사육장소	

생물정보	학명	수량	폐사사유	처리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폐사 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죽은 야생생물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야생생물 폐사 신고확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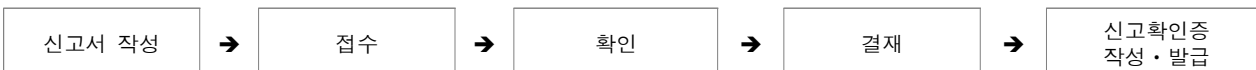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처리절차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 []반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실수요자	④ 상호(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주소 (전화번호:)	

수입 명세

⑦ 품목 번호(HS)	⑧ 품명		⑨ 수량	⑩ 단가 (US \$)	⑪ 금액 (US \$)	⑫ 수입국
	학명	보통명				
⑬ 용도	[] S	[] P	[] E	⑭ 사육장 소재지		
	[] Z	[] 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위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1부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⑧ 품명란은 학명 및 보통명(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을 적습니다.
- ⑨ 수량란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마리 수를 적습니다.
- ⑪ 금액란은 수입했을 때의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적습니다.
- ⑫ 수입국란은 원산지를 적습니다.
- ⑬ 용도란은 S(학술연구 및 보호·복원), Z(생물자원관 전시용), P(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허가받은 경우), T(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허가받은 경우), E(동물원 등에서 전시하는 경우)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처리절차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반입 허가증					
허가 받은자	성 명		실 수요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허가 사항	품명(학명 및 보통명)	수량	용도	사육·재배장 소재지	수입국
허가 조건					
유효 기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위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구 분	허가 번호	허가일	수입 명세				신청인			실수요자			수입국	용도	사육장 주소
			품명		수량	금액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학명	보통명											

364mm×25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백색목록 []수입 []반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실수요자	④ 상호(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주소 (전화번호:)	

수입 명세

⑦ 품목 번호(HS)	⑧ 품명		⑨ 수량	⑩ 단가 (US \$)	⑪ 금액 (US \$)	⑫ 수입국
	학명	보통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위 백색목록의 수입[]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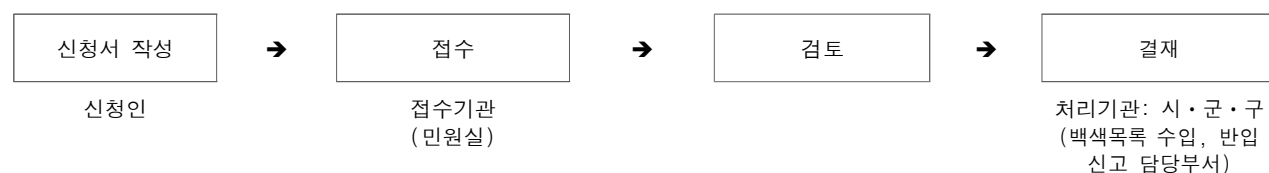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 서류	1.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⑧ 품명란은 학명 및 보통명(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을 적습니다.
- ⑨ 수량란은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마리 수를 적습니다.
- ⑪ 금액란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적습니다.
- ⑫ 수입국란은 원산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 []반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실수요자	④ 상호(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주소 (전화번호:)	

수출 명세

⑦ 품목 번호(HS)	⑧ 품명		⑨ 수량	⑩ 단가 (US \$)	⑪ 금액 (US \$)	⑫ 수출국
	학명	보통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위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 반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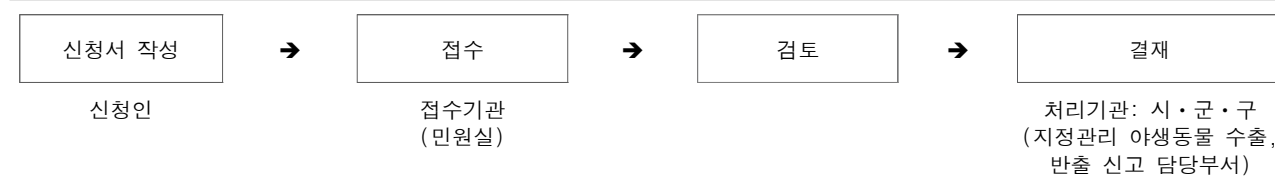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용장, 상업송장(인보이스)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송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⑧ 품명란은 학명 및 보통명(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을 적습니다.
- ⑨ 수량란은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마리 수를 적습니다.
- ⑪ 금액란은 본선인도가격(FOB)를 적습니다.
- ⑫ 수출국란은 신용장, 상업송장(인보이스) 등에 명시된 도착 국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 []양수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양수인 (보관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생물 정보	학명	수량	용도	양도사유(보관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양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자르는 선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확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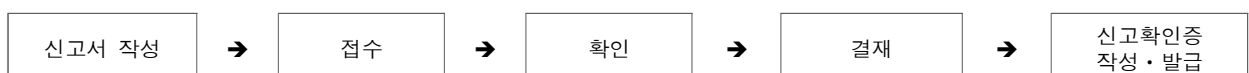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연락처		
	사육장소			
생물 정보	학명	수량	폐사사유	처리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확인증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제	→	신고확인증 작성·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영업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야생동물 판매업·생산업 신청자 작성 항목			
취급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인력 현황(종사자 수)	명
종별 개체수 (취급예정 포함)	학명	마릿수	
		암컷	수컷
			총합
* 사육 종별로 모두 작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3의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해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이수서(영업허가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일 것을 요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업허가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유의사항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번호 제 호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허 가 증

영업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야생동물생산업의 경우 생산동물을 함께 표시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판매업 으로 영업을 허가합니다.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영업장 현황

공동 기재사항		지정관리 야생동물 포함 여부	여 / 부	종업원 수	명
판매 · 수입 · 생산	시설면적	사육실	m ²	분만실	m ²
		격리실	m ²	판매실	m ²
		건물소유 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3. 영업허가의 변경사항

4. 그 밖의 행정조치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조치일자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분일자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재발급 사유				
허가증 분실사유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대표자		
	영업장 주소		
	영업의 종류		
변경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판매업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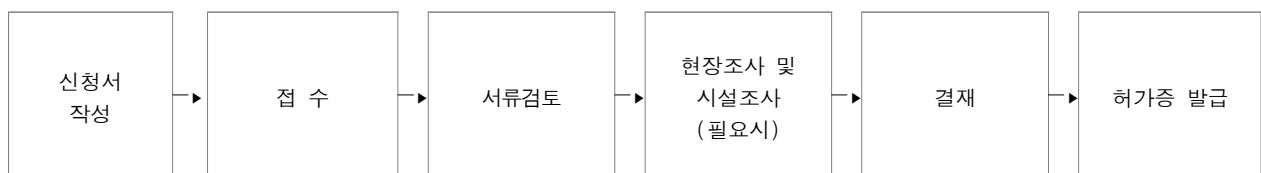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폐업일 (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보관·관리중인 야생동물 처리계획 (휴업·폐업시 작성)	야생동물 정보(종류, 수량)	처리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영업의 종류란에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접 수

시장·군수·구청장



서류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결재

시장·군수·구청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허가번호			
	주소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내용 고지 확인서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짜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허가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결재	허가증 재발급(폐기)
신고인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보	영업장의 명칭(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허가번호 (허가일자)		영업의 종류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취급동물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개체 정보	종별 정보	학명	보통명		개체수	성별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암____ / 수____
위탁 관리 업	위탁자 성명	위탁자 연락처	위탁내용		위탁기간	비고
			☐ 사육 ☐ 훈련 ☐ 보호		~	
			☐ 사육 ☐ 훈련 ☐ 보호		~	
			☐ 사육 ☐ 훈련 ☐ 보호		~	
			☐ 사육 ☐ 훈련 ☐ 보호		~	
			☐ 사육 ☐ 훈련 ☐ 보호		~	
			☐ 사육 ☐ 훈련 ☐ 보호		~	
특이 사항						
	※ 건강상태(질병발생, 이상개체 등) 등 특이사항 기록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2. 영업장 현황

야생동물 판매업	사육실	m ²	격리실	m ²
	건물소유 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야생동물 수입업	사육실	m ²	판매실	m ²
	격리실	m ²	-	m ²
	건물소유 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야생동물 생산업	사육실	m ²	분만실	m ²
	격리실	m ²	판매실	m ²
	건물소유 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3. 영업실적(야생동물 판매업·야생동물 수입업·야생동물 생산업)

구분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분류군	학명	개체수	분류군	학명	개체수	수입국	생산개체수 보유현황			생산 개체수	월 판매 개체수
								분류군	학명	개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 비고